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65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김한규·박상혁·박정현

이기헌 • 박민규 • 진선미

위성락 • 모경종 • 강경숙

강유정・정을호・조 국

민병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여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등록기관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물품을 공급하면서 얻게 되는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의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의무기재사항이지만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음.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여러 가맹본부의 사업을 비교 하여 가맹점 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임. 따라서, 영업비밀로 분류하기보다 가맹희망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정보공 개서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은 영업비밀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고 가맹희망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라목 및 제6조의2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라목 중 "부담"을 "부담[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제조원가 또는 구입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과 관련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

급금액 및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영업비밀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된 정보공개서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 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 하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라. -----부담[가 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 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 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 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 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 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제조원가 또는 구 입원가를 초과하는 금액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과 관련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마. ~ 아. (생 략) 11. · 12. (생략)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 ② (생 략) ③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 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 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 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 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신 설>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 율을 포함한다]

마. ~ 아. (현행과 같음) 11. • 12. (현행과 같음) ①・② (현행과 같음)

<단서 삭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 개서의 기재사항 중 「개인정 보 보호법 | 제2조제1호에 따 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 비밀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 급금액 및 가맹점당 매출액 대 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

④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 사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 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 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 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u>⑥</u> (생 략)

| 율은 영업비밀로 보지 아니한 |
|-----------------------|
| <u>다.</u> |
| <u>5</u> |
| 제3항 및 제4항 |
| |
| |
| |
| |
| |
| <u>⑥</u> 제3항 및 |
| 제4항 |
| |
| |
| |
| |
| |
|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